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윤엔리특허법인(유한)
대한민국 08502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6, 에
이스 하이엔드타워 5차 3층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3월 06일 (06.03.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F201906-0026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16223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11월 25일 (25.11.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1월 26일 (26.11.2018)

국제특허분류(IPC)
H04M 1/725(2006.01)i, H01R 24/58(2011.01)i, H01R 24/60(2011.01)i, H01R 107/00(2006.01)n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20년 03월 06일 (06.03.2020)

심사관
장기정
전화번호 +82-42-481-8364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2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5,13	있음
	청구항	1-4,6-12,14-20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2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KR 10-2018-0056218 A (삼성전자주식회사) 2018.05.28
- D2: KR 10-2018-0124876 A (소니 주식회사) 2018.11.21
- D3: KR 10-2007-0006078 A (삼성전자주식회사) 2007.01.11
- D4: WO 2012-027452 A1 (MARVELL WORLD TRADE LTD. 등) 2012.03.01
- D5: KR 10-2018-0045416 A (삼성전자주식회사) 2018.05.04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 9

D1에는 GND, CC1라인과 CC2라인, USB 타입의 플러그가 삽입되는 제1리셉터클(956); 제1리셉터클(956) 측의 CC1라인 또는 CC2라인을 이용하여 풀다운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 충전 을 수행하는 구성; 및 충전 장치와 오디오 연결 여부에 따라 전력과 데이터 송수신을 수 행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단락 [0038], [0079]-[0082], 도면 12 참조)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1은 고속충전 여부에 따라 GND핀이 오디오 신호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점 이 D1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D2의 GND 핀(A12, B12)을 이용하여 오디오 어댑터 액세스리 모드를 인식하는 구성(단락 [0032]-[0036]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 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9는 전자 장치의 데이터 또는 전력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과 기 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 9는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10-16의 "전자 장치의 데이터 및 전력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이나, "전자 장치의 데이터 또는 전력 송수신 방법"에 관한 청구항 9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0-16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PCT 6조).

청구항 13-14의 "상기 외부 장치" 및 청구항 15-16의 "상기 제1USB타입"은 지칭하는 바가 불명확합니다(PCT 6조)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2. 청구항 2-8, 10-16

청구항 2-3, 10-11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2의 그라운드용 핀을 사용하여 RF신호를 수신하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점(단락 [0030]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4, 12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설계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항 5, 13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인용문헌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 6, 14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1의 VBUS 라인을 통해 디폴트 전력을 제공하는 점(단락 [0080]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7, 15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1의 외부 장치는 제1 USB 타입의 제1 플러그, 제1 USB 타입의 제1 리셉터클 및 아날로그 오디오를 포함하는 점(단락 [0040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8, 16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1의 제1 USB 타입은 USB타입 C를 포함하는 점(단락 [0041]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2-4, 6-8, 10-12, 14-16은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고, 청구항 5, 13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3. 청구항 17

D1에는 GND핀을 포함하는 제1USB 타입의 제1플러그(952); 제3플러그(972)가 삽입되는 제1리셉터클(956); 및 DET1 단자를 포함하는 오디오 잭(954)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단락 [0038], [0079]-[0082], 도면 12 참조)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17은 DET1 단자는 복수의 GND 핀 중 적어도 하나와 연결되는 점이 D1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D3의 전자기기(100)의 접속 감지부(70)에 그라운드 핀 접속부가 접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속되는 점(단락 [0025]-[0034]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7은 D1 및 D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4. 청구항 18-20

청구항 18의 추가적인 특징은 D2의 안테나 신호가 쉘드선(14)을 통해 공급되는 점(단락 [0104]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9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입력 또는 출력되는 소리를 처리하는 오디오 모듈(280)을 포함하는 점(단락 [0030]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20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제1 USB 타입은 USB타입 C를 포함하는 점(단락 [0041]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8은 D1, D2 및 D3의 결합에 의해 청구항 19-20은 D1 및 D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20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